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1.

발 의 자 : 허성무 · 조계원 · 임오경
오세희 · 허종식 · 박 정
이재관 · 이병진 · 권향엽
임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,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리고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외에도 실종아동등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, 해당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

따라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·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함(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신설 등).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제11조”를 “제11조 및 제14조의2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신원불상변사자의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) ① 경찰청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(이하 “신원불상 변사자”라 한다)가 실종아동등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불상변사자로부터 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.

② 경찰청장은 채취한 검사대상물이 부패 또는 오염되거나 다른 검사대상물과 바뀌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취,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3(신원불상변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·운영) ① 검사기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채취한 검사대상물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,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4(데이터베이스의 연계) 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·제14조의3에 따른 신원불상변사자 데이터베이스 및 「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축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다.

1. 신원불상변사자의 실종아동등 여부를 확인하고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호자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경우
2.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신원불상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
3. 법원(군사법원을 포함한다)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

②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색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5(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·회보) 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(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.

1.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

2.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실종아동등 발견을 목적으로
요청하는 경우

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, 작성자, 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 일시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검색결과 회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6(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) ① 검사기관의 장은 신원불상변사자의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제14조의3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.

② 검사기관의 장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보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<u>제11조</u> 에 따른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12조(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11조 및 제14조의2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② (현행과 같음) <u>제14조의2(신원불상변사자의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) ① 경찰청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(이하 “신원불상변사자”라 한다)가 실종아동등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불상변사자로부터 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.</u> <u>② 경찰청장은 채취한 검사대상물이 부패 또는 오염되거나 다른 검사대상물과 바뀌지 아</u>

<신 설>

<신 설>

이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채취, 운반 및 보관
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3(신원불상변사자 데이
터베이스 구축·운영) ① 검사
기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
채취한 검사대상물에 대하여
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
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·운
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
실시,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
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4(데이터베이스의 연계)

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정
보 데이터베이스·제14조의3에
따른 신원불상변사자 데이터베
이스 및 「디엔에이신원확인정
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
률」에 따라 구축된 디엔에이
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검색
할 수 있다.

1. 신원불상변사자의 실종아동

<신 설>

등 여부를 확인하고 실종아동
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호
자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
경우

2.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
죄수사 또는 신원불상변사자
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
경우

3. 법원(군사법원을 포함한다)
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
하는 경우

②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색
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5(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
의 검색·회보) ① 검사기관의
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
신원확인정보(개인 식별을 목
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통하여
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
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
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검
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
있다.

1.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

<u><신 설></u>	<u>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</u> <u>2.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실종아동등 발견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</u> <u>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, 작성자, 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 일시를 명시하여야 한다.</u> <u>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검색결과에 회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제14조의6(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) ① 검사기관의 장은 신원불상변사자의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제14조의3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검사기관의 장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보관하여야 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